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0-50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20-51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52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3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50
----------	---------

발의일자	2020. 6. 2.
발 의 자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권순모 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군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위배소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구체화(안 제3조제1항)

- 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제4호)
- 2)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제5호)
- 3)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제6호)
- 4)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제7호)
- 5)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제8호)

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신청에 따른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음

라.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삭제(현행 제6조~제10조)

- 1) 이유 : 지방재정법령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중복되어 지방자치법령 위배
- 2)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마. 불필요한 규정 정비(현행 제11조~제13조)

1) 수당, 준용, 시행규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6. 3. ~ 6. 9.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6.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
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예정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50,000천원/단지(최대)
- 승강기교체 지원사업은 대당 20백만원(단지당 150백만원 내)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총 비용(a - b)		500	500	500	500	500	2,500
세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00	200	200	200	200	1,000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사업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a)	500	500	500	500	500	2,500
세입		해당없음					
	소계(b)						

3. 관련 의견 : 해당없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10개단지 × 20,000천원/연
2.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사업 : 15대 × 20,000천원/연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51
----------	---------

발의일자	2020. 6. 2.
발 의 자	신재화, 김향란, 박수자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나.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확대 (안 제2조 ~ 안 제3조)
- 다. 지원범위 규정 (안 제4조)
- 라. 조문정비 (안 제5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6. 3. ~ 6. 9.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을 “거창군”으로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법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중 “자율방범대와 연합회”를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가”를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방법초소 개선사업
3.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군수는 자율방범대의”를 “군수는”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적이 뚜렷한 자율방범대와”를 “공적이 현저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자율방범대원”을 “대원”으로 한다

제8조·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u>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u>자율방범대</u>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u>군</u>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u>자율방범대와 연합회</u>로 한다.</p>	<p><u>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u>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u>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u>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u>“외국인 명예경찰대”</u>란 <u>군</u>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u>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u>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 ① <u>군수는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가</u>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법활동에 필요한 <u>복장·장비 구입비 등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출동비</u> 2. <u>방법초소 유지 및 관리 비용</u> 3. <u>체육대회 등 자율방법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u> 4. <u>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u>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자율방법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u>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u>자율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u> 	<p>제4조(지원) ① <u>군수는</u>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u> 2. <u>방법초소 개선사업</u> 3. <u>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u>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u>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예산</u>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u>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u>
<p>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생략)</p> <p>② <u>군수는 자율방법대의</u>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5조(지도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u>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6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u>공적이 현저한 자율방법대와</u>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제6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u>공적이 뚜렷한</u>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u>자율방법대원</u>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u>대원</u>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u>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u></p>	<p><u><삭 제></u></p>
<p><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52
----------	---------

발의일자	2020. 6. 2.
발 의 자	심재수,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권순모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2조)
- 나.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6. 3. ~ 6. 9.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중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④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